

〈논문〉

미국 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이론과 방법론* - 우리나라 임상법학교육의 전망과 과제 -

全海晶**

요약

로여링(lawyring) 경험을 토대로 독자적인 학문영역을 구축하여 온 임상법학교육은 기존의 사례연습방법을 비판하면서 1890년대에 태동하여 1960년대와 1970년대 진보적인 개혁운동으로 확장되었다. 당시 학생들은 법을 사회변혁의 수단으로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였으며 각 로스쿨마다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하우스(in-house) 클리닉을 확산시켰다. 1990년대 이후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임상법학교육도 국제화되고 있으며 여러 전문분야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임상법학교육의 종류에는 임상법학교육의 기준이 되며 클리닉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하는 인-하우스 클리닉 이외에도 외부연수(externship)와 모의훈련(simulation)이 있다.

미국 임상법학교육 이론은 변호사 개인의 역할과 기능을 중시하는 미시이론과, 법제도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로여링을 이론화한 거시이론으로 구별된다. 특히, 개리 벨로우(Gary Bellow)는 1978년에 The Lawyring Process에서, “훌륭한 변호사(good lawyer)”라는 이론을 개발하였고 로여링 방법론을 실체법과 통합시킴으로써 이론과 실천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경험, 비판적 성찰, 책임 윤리, 간학문적 학습이라는 임상법학교육방법론에 따라 학생들은 소외된 사람을 돕는 로여링 경험을 토대로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변호사로서 법제도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배운다. 학생들은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 및 협력을 통해 법과 정책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고 로여링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들을 성찰하면서 사회정의에 공헌하는 책임 있는 변호사로서 성장한다.

학생실습규칙(student practice rule)이 없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차선으로 바람직한 임상모델은 외부연수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참여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강화함으로써 외부연수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로여링, 임상법학교육이론, 임상법학교육방법론, 한국에 적합한 임상모델, 법률구조

* 임상법학교육의 이론과 방법론을 소개한 이 논문의 앞부분은 본인의 박사논문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혀둔다.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박사후 연구원.

I. 서

2009년에 설립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미국 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을 도입하고자 한다. 미국 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¹⁾은 학생들의 로어링²⁾ 경험을 토대로 법률실무를 가르치는 법학교육이다. 기존의 소크라테스식 방법론이 비판을 받으면서 미국 로스쿨은 법학이론과 법률실무를 연계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1992년 맥크레이트 보고서³⁾ 이후 미국 로

-
- 1) 임상법학교육은 *clinical legal education*을 번역한 것이다. 임상(*clinic*, 클리닉)이라는 용어는 의학교육에서 차용한 것으로서 이 글에서는 임상과 클리닉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 2)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lawyer*라는 동사 형태는 없지만 *lawyering*은 동명사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Alexander Scherr (2002). "Lawyers and Decisions: A Model of Practical Judgment." 47 *Vill. L. Rev.* 161, 164면, 각주 6). 미국 로스쿨에서 사용되는 로어링(*lawyering*)의 개념은 기존의 '변호사처럼 생각하는 것 (*think like a lawyer*)'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변호사가 무엇을 하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통해 발전되었다. '변호사처럼 생각하는 것'과 '변호사가 하는 것'은 단절된 개념이 아니다.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학생들은 변호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배운다. 한편,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로어링'은 법률실무 또는 변호사 활동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가치 중심의 임상법학교육이론에 기반할 때 '로어링'은 단순히 변호사가 하는 일이나 변호사처럼 행동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가치 중심의 임상법학교육이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III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 3) 미국 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 산하의 '법학교육 및 법조인 자격심사에 관한 분과위원회'는 1992년 7월에 "맥크레이트 보고서(MacCrate Report; "Legal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An Educational Continuum)"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변호사 윤리를 강조하면서 법실무와 법이론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법학교육의 개선을 요청하였다. 한편, 최근에 발표된 카네기 보고서(Carnegie Foundation Report)에서는 법률추론과 법률문서작성을 통한 이론과 실무의 연계를 시도하였으며, '기호 교육학(*signature pedagogy*)'이라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리 설먼(Lee S. Shulman)이 주장한 '기호 교육학'의 특징은 생각과 행동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는 교육학적인 시도에 있으며, 그 개념은 현대 언어학에서의 일반적인 개념과 유사하다. William M. Sullivan, Anne Colby, Judith Welch Wegner, Lloyd Bond & Lee S. Shulman (2007). *Educating Lawyers* (San Francisco; JB-The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23면 이하 참조. '기호 교육학'은 전문인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는 본질적인 작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전문인에게 특유한 교육학으로서 "창문(窓門)"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기호 교육학은 방법론과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표면적인 구조(*surface structure*)'를 만들어 낸다. Susan Bryant & Elliott S. Milstein (2007-2008). "Rounds: A "Signature Pedagogy" for Clinical Education?" 14 *Clinical L. Rev.* 195, 각주 1). 기호 교육학에는 '표면적인 구조' 이외에도 심화 구조(*deep structure*), 암묵 구조(*tacit structure*), 그림자 구조(*shadow*

스쿨은 임상법학교육을 강화해 오고 있다. 임상법학교육을 통해 교수진과 학생 사이에 위계적인 관계가 완화되면서 미국 로스쿨의 교육은 교수와 학생이 협력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 개인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가치 중심의 임상법학이론은 미국의 전통적인 로스쿨이 가르치지 못했던 로어링 기술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사회정의라는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임상법학교육방법론을 개발해 오고 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리하면서 학생들은 로어링 경험을 토대로 책임감을 갖고 임상작업에 임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교육받는다.⁴⁾

이하에서는 임상법학교육이론 및 임상법학교육방법론을 다루면서 게리 벨로우(Gary Bellow)의 가치 중심의 임상법학이론을 기준으로 임상교육방법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미국 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 이론을 통해 임상법학교육의 목표가 단순히 송무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로어링 경험을 통하여 법제도 내에서 법조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회정의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임상법학방법론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임상법학교육의 종류 및 역사

미국의 임상법학교육에는 로스쿨 내(內) 클리닉(인-하우스 클리닉, in-house clinic), 외부연수(엑스턴십, externship), 모의훈련(시뮬레이션, simulation)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미국 대부분의 로스쿨은 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클리닉 프로

structure)가 있다. Sullivan et al.(2007), 24면. 한편, *Educating Lawyers*와 관련하여 법률문서작성수업과 임상법학교육과의 연계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Sarah O'Rourke Schrup (2007-2008). "The Clinical Divide: Overcoming Barriers to Collaboration between Clinics and Legal Writing Programs." 14 *Clinical L. Rev.* 301 참조.

- 4) 로어링 경험을 토대로 하여 독특한 학문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 로스쿨의 현대 임상법학교육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진보적 개혁운동에서 유래하였다. 당시 학생들은 법을 사회변혁의 수단으로 여기고 법에 관한 지식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대리할지를 배우고 싶어 하였다. 임상법학교육은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형성되었다. Elliott S. Milstein (2001). "Clinical Leg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In-House Clinics, Externships, and Simulations." 51 *J. Legal Educ.* 375, 375면.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로스쿨 내 클리닉이란 로스쿨 부설 법률사무소에서 로스쿨이 고용한 클리닉 전담 변호사가 직접 로스쿨 학생들을 지도·감독하고, 학생들은 학생 변호사(student lawyer)⁵⁾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리닉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원 송무, 상대방 변호사와의 협상, 의뢰인 면담과 상담, 의견서 작성, 소송 대리와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업무가 포함된다.⁶⁾ 로스쿨 내 클리닉은 미국 임상법학교육의 기준이 되는 모형으로서, 클리닉의 ‘교육’적 측면을 중요시 한다.

외부연수 클리닉이란 학생들이 정부산하 기구나 시민단체에 있는 법률 사무소 등 로스쿨 외부에 있는 전문적 환경에 배치되어⁷⁾ 그곳에 있는 변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작업하면서 로스쿨 교수의 감독을 따로 받는 클리닉을 말한다.⁸⁾ 교수·학생·감독자(변호사)라는 삼각관계에서 로스쿨 교수는 학생의 업무와 학생에 대한 감독자(변호사)의 평가를 감독한다. 대부분의 외부연수 학생들은 본인이 실습한 내용과 이를 통해 느끼고 성찰한 것을 실습일지에 쓰고, 로스쿨 교수와 만나 외부연수를 통해 배운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거나, 세미나 토의에 참여한다.

-
- 5) 로스쿨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상실습을 원하는 로스쿨 학생들은 증거법이나 소송법과 같이 로스쿨이 선수과목으로 정한 법과목을 이수하고 그 과목에서 기준 학점 이상을 받은 후 로스쿨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주법(州法)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변호사의 지도·감독하에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학생실습규칙(student practice rule)”이라고 하고, 자격이 부여된 임상학생들을 “학생 변호사(student lawyer)”라고 칭한다.
- 6) 오늘날에는 다양한 민사 사건을 다루는 일반 실무 클리닉 이외에도, 형법·가족법·가정폭력·국제인권·지역사회 경제개발·세금과 같은 영역에 전문화된 클리닉들이 있다. 특히, 거래나 상법 분야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대리하는 클리닉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청소년·여성·노인·재소자·AIDS 환자와 같은 특정한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클리닉이 개설되기도 한다. Milstein (2001), 376면.
- 7) 외부연수 클리닉은 현장 배치 클리닉(field placement clinic)이라고도 불리 운다. Linda Morton (1993). “Creating a Classroom Component For Field Placement Programs: Enhancing Clinical Goals With Feminist Pedagogy.” 45 *Me. L. Rev.* 19, 23면 이하.
- 8) AALS 임상용어정리 참조. <http://www.aals.org>. 외부연수 클리닉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 참조. Peter Jaszi et al. (1999), “Experience As Text: The History of Externship Pedagogy at the Washington College of Law, American University.” 5 *Clinical. L. Rev.* 403; Henry Rose (1988). “Legal Externships: Can They Be Valuable Clinical Experiences for Law Students?” 12 *Nova. L. Rev.* 95; Linda F. Smith (1999). “Designing an Extern Clinical Program: Or As You Sow, So Shall You Reap.” 5 *Clinical. L. Rev.* 527.

모의훈련이란 학생들이 교실 환경에서 모의(模擬)로 변호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일정한 로어링 과정을 학습하는 임상법학교육이다.⁹⁾ 이것은 임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교수법이었으나 오늘날 법학교육에 널리 차용되고 있다. 모의훈련은 주로 역할극(role play)¹⁰⁾의 형태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면담 및 상담(interviewing and counseling), 협상, 법률문장,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 한다.)¹¹⁾, 소송과 항소 실습 등을 위한 세미나에서 사용된다. 이 때 임상에서 사용되는 많은 기술들이 모의훈련을 통해 가르쳐진다.

한편, 미국의 임상법학교육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세 단계의 시기로 구분된다.¹²⁾ 임상법학교육의 제1시기는 1890년대 사례연습방법(case method)이 나온 바로 직후인 20세기 초부터 1950년대까지를 말하며 임상법학교육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189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에는 로스쿨에서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자원봉사형식의 법률구조 사무실이 개설되었고, 1917년에는 윌리엄 로워(William Rowe) 교수가 로스쿨 커리큘럼에 임상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주창하였다. 나아가 1921년 애플레드 리드(Alfred Z. Reed)는 로스쿨 학생들이 실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반 교육, 법학이론에 대한 이해, 실질적 기술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임상법학교육은 셋째 요소인 실질적 기술훈련과 관련된다. 1920년대부터 1940년대에도 존 브래드웨이(John Bradway)와 제롬 프랭크(Jerome Frank)

9) Milstein (2001), 376면.

10) 아메리칸 로스쿨의 「가정폭력 클리닉」은 세미나에서 모의훈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먼저 임상교수는 학생들에게 의뢰인이 주장하는 청원서를 제시한다. 그런 다음, 참여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의뢰인과 학생 변호사로 역할을 배분한다. 의뢰인 역할을 맡은 학생들을 위해 의뢰인에 대한 정보와 지시사항을 제시한다. 학생 변호사 역할을 맡은 학생들에게는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각자의 역할을 통해 학생들은 법여성학이론, 비판인증이론, 빈곤법에서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면담·상담 기술, 사건이론 전개, 의뢰인 중심의 로어링, 맥락화를 배운다. Margaret E. Johnson (2005). “An Experiment in Integrating Critical Theory and Clinical Education.” 13 *Am. U. J. Gender Soc. Pol’y & L.* 161, 175-176면.

11) ADR은 대안적 분쟁해결로서 본 논문의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대안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 참조. Beryl Blaustone (1992). “Training the Modern Lawyer: Incorporating the Study of Mediation into Required Law School Courses.” 21 *Sw. U. L. Rev.* 1317; Jacqueline M. Nolan-Haley & Maria R. Volpe (1989). “Teaching Mediation As a Lawyering Role.” 39 *J. Legal Educ.* 571; Janet Weinstein (1990). “Teaching Mediation in Law School: Training Lawyers to Be Wise.” 35 *N.Y.L. Sch. L. Rev.* 199.

12) Margaret Martin Barry (2000). “Clinical Education for This Millennium: The Third Wave.” 7 *Clinical L. Rev.* 1, 4면.

는 법학교육의 필수요소로서 로스쿨 내에 임상법학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¹³⁾ 1950년대에는 로버트 스토레이(Robert Storey) 교수 등이 임상법학교육의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이나 공익 법률 사무소를 통틀어서 28개의 클리닉만이 존재하였다. 1950년대 말에는 법률구조 임상교육을 실시하는 로스쿨이 35개로 확대되었으나, 이 중 13개 로스쿨만이 로스쿨 내에 클리닉을 두어 임상법학 수업 이수를 학점으로 인정하였다.

제2시기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시기로서 임상법학교육의 확장기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로스쿨 학생들은 사회정의와 관련된 법학교육 및 기존의 법학교육에 대한 대안 교육을 요구하였다.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당시 미국에서는 로스쿨에 기반을 둔 인-하우스 클리닉이 급격하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학이론에서는 기존법학을 비판한 비판법학이 대두하였고, 법률실무에서도 기존법학을 비판하면서 임상법학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임상법학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개념을 정의하지 못하다가 1970년대 말에 개리 벨로우(Gary Bellow) 교수에 의해서 임상법학이라는 용어가 강학상 사용되었다.¹⁴⁾ 1980년대 말, 로스쿨 내에서의 임상실습에 대한 위원회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는 등 1980년대 후기와 1990년대에는 임상법학교육이 로스쿨에 널리 퍼졌다. 임상법학교육과 관련된 학술지인 *Clinical Law Review*¹⁵⁾가 탄생한 것도 이 시기이다.

제3시기는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말하며 임상법학교육의 디지털화 또는 지구화 시대라고 한다.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지구 공동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임상 사례도 국경을 넘나들며 따라 새로운 로어링 모델이 등장하게 된다. 논의의 중심이 법적 권리의 침해로부터 의뢰인의 당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옮겨졌다. 최근에는 여러 전문분야에 걸친 쟁점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심리학

¹³⁾ Scherr (2002), 169-170면.

¹⁴⁾ Gary Bellow & Bea Moulton (1978). *The Lawyering Process* (St. Paul: West Publishing)를 통해 임상법학교육이론이 확립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III. 임상법학교육이론 참조.

¹⁵⁾ *Clinical Law Review*는 로어링과 임상법학교육에 관한 잡지로서 1994년에 처음으로 발간되었다. 미국 로스쿨 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 이하 'AALS'), 임상법학교육협회(Clinical Legal Education Association, CLEA), 뉴욕 대학교 로스쿨(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의 후원으로 6개월마다 한 번씩 발간되고 있다. 현재까지 2007년 가을, 제14권 제1호가 발간되었다. <http://www.law.nyu.edu/journals/clinicallylawreview/vol14no1fall2007/index.htm> (2008년 8월 4일 검색).

이나 정신분석학 또는 사회복지학이나 공중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연관된 클리닉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다. 1992년 7월에 “맥크레이트 보고서” 이후 로스쿨들은 면담 및 상담 등 필수 로어링 기술과 전문가로서의 가치를 중요한 교과목으로 다룬다. 법학교수들도 학생들에게 21세기의 실무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과 가치를 개발하도록 전체 커리큘럼을 편성한다. 학생들은 종교·문화·인종·기타 경계를 초월하는 경험을 통해 로어링을 배운다. 경계를 초월하는 이러한 임상법학교육 과정은 오늘날 지구화 시대에 바람직한 법학교육으로서 미국 로스쿨에 확산되고 있다.¹⁶⁾

III. 임상법학교육이론

“변호사가 무엇을 하는가”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온 임상법학교육운동은 오늘날 변호사의 역할과 법의 실천에 관한 새로운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임상가(clinician)¹⁷⁾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지식과 결합하려는 노력으로서, 임상가들은 변호사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로어링의 행태를 유용하게 설명할 이론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법학자들이나 변호사들과 서로 논쟁을 하면서 임상법학교육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변호사가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함에 있어서 캐리 멩켈-미도우(Carrie Menkel-Meadow)는 임상교육이론을 미시이론과 거시이론으로 구별한다. 미시이론은 변호사 개인의 역할과 기능을 중시하는 반면, 거시이론은 법제도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로어링을 이론화한다.¹⁸⁾

미시이론과 거시이론의 구별은 임상법학교육의 목표를 로어링 기술을 가르치는 데 두느냐 아니면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가치에 두느냐에 따른 차이라고 볼

16) 제3시기에 미국 로스쿨 교과과정 내에서 임상법학교육의 이론과 방법론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해정(2008). **미국 임상법학 교육방법 이론과 실제**(서울: 한국학술정보(주)) 참조.

17) 임상가(clinician)란 로스쿨에서 임상을 가르치는 변호사를 지칭한다. 이 중에는 미국 로스쿨의 전임교수로 임용된 사람도 있고 로스쿨 교수는 아니지만 임상을 가르치기 위해 고용된 변호사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을 통칭하여 임상가라고 부르기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체법을 가르치는 교수와 구별하고자 임상교수라고 칭한다.

18) Carrie Menkel-Meadow (1980). “The Legacy of Clinical Education : Theories About Lawyering.” 29 *Clev. St. L. Rev.* 555, 556면.

수 있다. 로스쿨 학생들이 졸업 후에 변호사 업무를 좀 더 능력 있고 만족스럽게 수행하기 위해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구별이다. 이것은 결국 학생들이 졸업하고 실무를 시작하면서, 나아가 경력을 쌓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교육이 이 목표를 수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가에 관한 생각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¹⁹⁾

1. 가치 중심의 거시이론

가. *The Lawyering Process*

변호사가 무엇을 하는가를 연구함에 있어서 임상가들은 변호사의 총체적 기능이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가치 중심의 거시이론은 개리 벨로우의 임상교육에서 영감을 받아 발전하였다.²⁰⁾

임상교육이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벨로우는 1978년에 *The Lawyering Process* (이하 ‘TLP’이라 한다.)²¹⁾에서 “훌륭한 변호사(good lawyer)”라는 이론을 개발하였다. 그는 로어링 방법론을 실체법과 통합시킴으로써 이론과 실천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TLP는 법학교육, 로어링, 로어링과 법학교육의 연관성에 관한 책이면서 변호사의 역할과 그 역할이 정의(正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변호사 윤리에 관한 책이다. TLP는 임상가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²²⁾

¹⁹⁾ Susan Bryant & Elliott S. Milstein (2003). “Reflections upon the 25th Anniversary of the Lawyering Process: An Introduction to the Symposium.” 10 *Clinical L. Rev.* 1, 20면.

²⁰⁾ 벨로우는 법률 서비스 실무가 상투적이며 의뢰인은 최소한의 결과를 얻기 위해 조종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벨로우에 따르면, 변호사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기술을 창의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제시된 초기 문제에만 과도하게 집중한다. Scherr (2002), 183-188면.

²¹⁾ *The Lawyering Process*는 총 1121면으로서 I. 변호사의 역할, 어떻게 전문직으로서 사회화 되는가: 관점- 직업의 가치, 적합성, 변호사와 이에 미치는 강제력과의 관계성 II. 변호사의 기술: 과제 및 실무상 관련성 1. 예비적 견해 2. 기술 측면 (1) 면담 (2) 사건 구성 (3) 협상 (4) 증인조사 (5) 논쟁 (6) 상담 ① 평가: 대안제시, 결과예측 (예: 수학적 모형제시), ② 조언: 책임분배, 애매함과 감정처리 3. 윤리 측면: 이해충돌, 비밀 준수 충돌, 의뢰인의 불법행위, 위증, 공익 변호사의 윤리, 특정 의뢰인 대리 거부 III. 변호사의 삶: 에필로그: 직업적 만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Bryant & Milstein (2003), 3-11면.

²²⁾ 당시에 임상가는 학자가 아니라고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상가들이 학문으로 다루고자 했던 주제들은 지적 가치가 없다고 무시되었다.

그는 법을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정의(正義)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²³⁾ 자원의 불균형과 로여링의 정치적 본질을 강조한 벨로우는 변호사 개인의 역할에 대한 미시적 관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변호사가 어떤 가치나 목적에 기여하는 것인지를 고려하라고 요구한다. 학생들이 변호사가 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을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우리 사회에서 맡은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가 검토되어야 한다.²⁴⁾

TLP는 그 내용의 광대함으로 인해 당시 로스쿨에 수용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지만, 이후의 많은 임상가들이 TLP에서 제시된 방법론을 임상에 적용함으로써 오늘날 임상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²⁵⁾ 벨로우의 이론이 임상법학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로여링 연구가 지적(知的) 과제이며 법학에 속함을 증명하였다. 둘째, 임상방법론이 법학교육으로서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독립적 로여링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준거틀을 개발하였다. 넷째, 로여링 연구를 하나의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로스쿨 학생들의 비판적 성찰을 장려하였다. 여섯째, 학생들 스스로 자신을 성찰케 하였다. 일곱째, 사회정의에 공헌하는 책임 있는 변호사라는 비전을 갖도록 하였다. 여덟째, 윤리 및 가치를 강조하였다. 아홉째, 간학문적 학습의 가치를 증명함으로써 임상법학교육 발전에 기여하였다.

나. 임상교육의 목표

가치 중심의 거시이론은 학생들이 법제도 속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사회정의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교육시키는 데 임상교육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이론이 실천을 형성하고 실천이 이론을 형성하는 로여링을 중심으

²³⁾ Menkel-Meadow (1980), 570면.

²⁴⁾ 멩켈-미도우는 거시이론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함으로써 법제도 내에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법률 전문직이 사회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뢰인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임상가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답을 연구하기 위한 탁월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법제도의 전문가이면서 학자로서 임상가는 개별 변호사가 법제도에 미치는 총체적 영향력과 법제도가 변호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임상가들은 법제도의 작용에 관하여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앞의 글, 569면.

²⁵⁾ TLP는 오늘날 임상학계에서 여전히 다루고 있는 개념들을 사용하였고 많은 임상가들이 추종하고 있는 방법과 통합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Bryant & Milstein (2003), 11-19면.

로 학생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의뢰인을 돕는 서사(敍事)와 사건이론을 배운다. 또한 학생들은 맥락의 중요성을 배우고 문제가 발생한 사회적·정치적·경제적·제도적 맥락의 효과를 인식하며 평가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윤리적 로어링과 가치 지향적 로어링을 통해 임상학생들은 주로 가난한 유색인 여성과 같은 소외된 사람들을 대리한다. 학생들은 그러한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우선적 가치로 삼는다. 또한 학생들은 공익을 실현하는 법제도를 개발한다. 권력과 권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논의하면서 학생들은 사회정의와 공정성을 배운다. 나아가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변호사가 담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 인지를 학습한다.²⁶⁾

다. 임상교육의 기본원리

위와 같은 임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임상법학이론의 원리는 사건이론에 따른 로어링, 의뢰인 중심의 로어링, 성찰적 실천을 내용으로 한다.²⁷⁾

사건이론에 따른 로어링이란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법률요소들 중 맥락상 유리한 사실을 강조하고 불리한 사실을 해명하면서 의뢰인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법을 말한다.²⁸⁾ 의뢰인 중심의 로어링이란 의뢰인이 처한 맥락의 독특성을 인식하고 의뢰인이 도움을 구하는 법률문제가 그 독특한 목표와 필요에 의해 발생함을 이해하는 것이다. 성찰적 실천이란 로어링을 통해 제기된 가치 쟁점들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술 중심의 미시이론

기술 중심의 미시이론은 개별 변호사의 선택, 결정, 행태를 중심으로 변호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임상법학의 내용으로 한다. 변호사가 어떤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 변호사가 어떠한 개인 상호간의 과정을 사용할 것인지, 변호사가 어떻게 자신과 그 사건의 상대방 변호인을 교육시킬 것인지, 변호사가 어떠한 결정을 내

²⁶⁾ Johnson (2005), 165면.

²⁷⁾ 앞의 글, 164면.

²⁸⁾ 어떤 사실을 조사할지,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 그리고 어떤 논증을 할지는 사건이론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임상학생들은 사건소개에서 사건이론을 초기에 어떻게 구성할지, 상황이 변함에 따라 사건이론을 어떻게 수정할지, 그리고 그 이론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 사건에 대한 그들의 작업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배운다. Milstein (2001), 378면.

릴 것인지 그리고 왜 그러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변호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에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법제도를 통해 그러한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내린 선택에 대하여 상대방 변호인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미시이론은 이를 기준으로 변호사의 특정 역할이나 기능의 한계를 설명한다.

멩켈-미도우는 주제별로 미시이론을 분류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주장자에 따라 지향하는 바가 다소 다르다. 멩켈-미도우는 데이빗 빈더(David Binder)와 폴 버그만(Paul Bergman)을 함께 다루고 있지만, 빈더는 로여링 전반에 걸쳐 의뢰인에게 의사결정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함에 반하여, 버그만은 법정 변론 기술만을 중심으로 당사자주의를 취하는 법원제도상 어떻게 하면 공격과 방어를 잘 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을 같은 주제로 묶기 보다는 각각의 이론가 내지 임상가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멩켈-미도우의 분류방법을 따르되, 주장자별로 재분류하여 각자가 주장하는 로여링 기술에 대한 견해를 살피도록 한다.

가. 빈더의 의뢰인 중심 로여링

변호사의 기술을 가장 정교하게 개념화한 데이비드 빈더는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의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의뢰인을 가장 잘 조력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²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첫 면담에서 의뢰인 스스로 목표와 관심이 무엇인지 정하도록 의뢰인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소송의 맥락에서 면담을 진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 특정한 거래의 원인과 효과를 연대 기준으로 철저하게 밝히는 것이다. 소송이 아닌 맥락에서는 사실들을 주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자산 설계에 관한 면담은 맨 처음에는 가족의 구성에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는 자산에, 마지막으로 양도 의사에 초점을 둔다. 마찬가지로 상담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의뢰인의 의사결정과정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이처럼 의뢰인을 조력하는 기술과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변호사는 가능한 대안

²⁹⁾ David Binder & Susan Price (1977). *Legal Interviewing & Counseling: A Client-Centered Approach* (St. Paul: West Publishing); Paul Bergman, David Binder, & Susan Price (1991). *Lawyers as Counselor* (St. Paul: West Publishing).

들을 선택·평가하기 위한 최선의 데이터를 개발할 수 있다. 의뢰인은 각 대안의 개인적·사회적 결과를 제시하는 반면, 변호사는 각 대안의 법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결과를 제시한다. 변호사가 무엇을 하며 또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개념화를 통해 의뢰인은 각각에 대한 선택기준들을 정할 수 있다.

나. 버그만의 반대신문을 위한 “안전 모델”

폴 버그만은 임상훈련을 통한 학습 대신에 반대신문(反對訊問)의 목표를 고려한다. 학생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리를 연역할 수 있어야 한다. 버그만은 반대신문에서 목표를 전개시키는 접근법을 제시한다.³⁰⁾

변호사는 자신의 목표와 송무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특정 절차를 개념화 한다. 변호사는 추론을 통해 자신의 선택과 수행을 평가할 수 있는 반대신문을 위한 “안전 모델(safety model)”을 만들어 낸다.³¹⁾ 변호사는 반대신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무슨 목적인지, 어떠한 맥락에서 할지를 질문한다. 이를 통해 지향하는 모델이나 개념적 구조들이 변호사의 다양한 개개의 기술과 역할을 위해 개발될 수 있다.³²⁾ 이 모델들은 로여링 행태를 충분히 설명하

30) Paul Bergman (1978). “A Practical Approach to Cross-Examination : Safety First.” 25 *UCLA L. Rev.* 547.

31) 안전 모델(safety model)이란 반대신문 모델(cross-examination model)을 말한다. 그 목적은 변호사가 의욕한 대답을 도출하거나 의욕하지 않은 대답에 반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어떠한 질문을 제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다. 버그만은 대답을 알지 못하면 질문하지 말라는 반대신문의 황금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안전 모델을 주장한다. 이 모델의 전제는 증인이 무엇을 말할지를 “아는 것”보다 의욕 하지 않은 대답에 반박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대신문에서 의욕하지 않은 대답에 반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제기할 질문을 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앞의 글, 555면. 가령,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반대측의 설명을 예측할 수 있고, 따라서 변호사 자신의 사실적 견해를 통해 부수적 증거에 의한 “나쁜” 대답(가령, 다른 제3자 또는 불일치하는 진술)을 반증할 수 있다면, 그 증인에 대한 질문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Menkel-Meadow (1980), 561면. 버그만은 높은 수준의 안전, 중간 수준의 안전, 낮은 수준의 안전의 세 가지 범주로 질문을 구분한다. 변호사는 신문(訊問)에서 높은 수준의 안전 질문을 제기해야 하지만, 때로는 이기기 위해 안전하지 않은 질문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중간 수준이나 낮은 수준의 안전 질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앞의 글, 556-575면.

32) 의도적으로 특정 역할이나 기술에 집중함으로써 임상가는 개념, 일반화, 로여링 과정이라는 구성요소에 관한 추상적 틀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일반화란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웠는지를 경험으로부터 이론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Bryant & Milstein (2003), 15-16면.

며 임상교육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다. 암스테르담의 의사결정자로서의 변호사 이론

분석의 단위로서 변호사의 결정을 중시하는 앤소니 암스테르담(Anthony Amsterdam)은 변호사의 선택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검토하고 변호사의 의사결정과정을 평가한다. 이는 로여링 행태를 연구하기 위한 접근방법이다.³³⁾

변호사는 우선 당해 사건에 대한 수많은 법률 전략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전략으로 삼는다. 그런 다음, 변호사는 의사결정이론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의사결정 양상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에서 별개의 양상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이론을 만든다. 변호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을 위해 임상가는 변호사의 의사결정에 근거가 되는 사실과 정보를 고려한다. 임상가는 자원의 희소성뿐만 아니라 의뢰인·상대 변호사·재판관이 변호사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실제법상의 원칙과 직업 규범에 따른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임상가는 변호사의 의사결정에서 전략적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법제도라는 광범위한 맥락에서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를 연구한다.³⁴⁾

임상가는 변호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연구하고자 모의훈련을 활용한다. 임상가는 모의훈련을 통해 변호사의 상호작용과 업무들을 관찰하여 변호사 의사결정의 설명모델과 양상, 준칙들을 연역추론한다.

³³⁾ 변호사 의사결정 분석을 위해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변호사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러한 목표를 얻기 위해 가능한 수단은 무엇인지, 그러한 선택 중에서 판단·현명한 의사결정-의 요소는 무엇인지, 그 변호사의 역할·목표·수단·결정과정들이 변호사가 작업하는 법률 기구의 구조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변호사가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는지, 그러한 선택이나 행동은 어떠한 선택을 암시했는지, 어떠한 대안 과정이 실현가능한지, 왜 그것들이 거부당하거나 고려되지 않았는지, 변호사의 목적과 자원의 견지에서 변호사의 의사결정과정과 대응 행동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었는지가 고려된다. Anthony Amsterdam (1974). "Perspectives on the Fourth Amendment." 58 *Minn. L. Rev.* 349, 377면 이하. 골드화브(Phyllis Goldfarb)는 경험에 근거한 자기평가라는 학습방법의 예로서 임상학생들은 암스테르담이 제기한 위와 같은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Phyllis Goldfarb (1991). "Theory-Practice Spiral: The Ethics of Feminism and Clinical Education." 75 *Minn. L. Rev.* 1599, 1649-1650면.

³⁴⁾ Menkel-Meadow (1980), 562면.

라. 스피겔의 고지된(informed) 동의이론

마크 스피겔(Mark Spiegel)은 변호사를 의사결정자로 보는 위와 같은 이론에 입각하여 변호사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에 관한 규범적 이론을 정립하였다.³⁵⁾ 변호사 업무의 본질은 의뢰인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충분한 설명에 입각한 동의(informed consent) 이론은 의료적 의사결정과 마찬가지로 법률적 의사결정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변호사는 범정의 선택, 발생된 문제에 적절한 법률 청원, 배심원 요구 여부, 특정한 질문 제기 여부, 혹은 특정 증인의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한다. 반면에, 의뢰인은 소제기 여부 혹은 타협 여부 등을 결정한다.

마. 콜럼비아 로스쿨 임상가들의 “개인 상호간의 과정”이론

토마스 쉐퍼(Thomas Shaffer), 게리 굿패스터(Gary Goodpaster)를 포함하여 콜럼비아 로스쿨(Columbia Law School)의 임상가들 및 이들과 공동작업 한 많은 정신분석학자들과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로어링이란 개인 상호간의 과정(interpersonal process)이다.³⁶⁾ 이 과정은 변호사·의뢰인·재판관·기타 법제도 관련자들의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한다. 개인 상호간의 과정이론은 로어링 과정을 심리학적인 것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지만, 변호사가 무엇을 하는가를 설명하고 이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³⁷⁾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클리닉을 운영하는 마이클 멜츠너(Michael Meltsner)와 필립 슈랙(Philip Schrag)은 집단 역학³⁸⁾을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변호사와 기타

³⁵⁾ Mark Spiegel (1979). “Lawyering and Client Decisionmaking: Informed Consent and the Legal Profession.” 128 *U. Penn. L. Rev.* 41. 스피겔은 암스테르담의 주장은 너무 단순하여 전략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³⁶⁾ interpersonal process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차이를 강조하는 대인관계 정신분석학(Interpersonal psychoanalysis)에서 유래한 말로서 이 글에서는 ‘개인상호간의 과정’이라고 번역한다.

³⁷⁾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인간 상호작용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양측에서 만족하는 인간적 필요에 대한 인식, 효과적 소통 기술의 필요성, 가치의 인정과 관용, 각자가 주장하는 목표와 목적, “이성적” 법제도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느끼는 감정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공통된 주제이다. Menkel-Meadow (1980), 565면.

³⁸⁾ 집단 역학(group dynamics)은 집단과 개인의 상호 작용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일반적 준칙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회심리학의 한 영역이다. 심리학과 사회학에서 집단이란 사회적 관계로 서로 연결된 둘 이상의 개인을 말한다. 집단들은 상호작용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많은 역동적 과정을 개발한다. 집단 역학의 주요 연구로는 집단

관련자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변호사는 한 발 물러서서 자신들이 의뢰인 및 기타 법제도 관련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성찰해야 한다. 멜츠너와 쉬랙은 모의훈련을 통해 협상자의 집단 역학을 따라하거나 변호사의 역할을 협상자로 전제하고 개인 상호간의 과정이론을 시험하였다.³⁹⁾

그러나 변호사의 업무는 협상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매우 복잡하며 직업적 역할이나 지위 그리고 직업윤리와 책임에 관한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로 인해 변호사-의뢰인 관계라는 맥락에서 변호사가 어느 정도 자신의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 혹은 개인 상호간의 대인관계에서 협상자, 친구, 조언자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어느 정도까지 신의성실(信義誠實) 의무를 저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다. 나아가 임상가는 어떤 수단이 변호사에게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상대방 변호사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호작용이 법률 전문직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다루어져야 한다. 변호사 개인의 상호작용들은 광의의 법제도로 확장된다. 따라서 임상가는 변호사가 대인관계에서 사용하는 수단을 분석할 때 반드시 어떠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임상가는 로여링 과정의 역학과 그것이 법제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찰해야 한다.

바. 콘들린의 메타학습이론

하버드 클리닉 프로그램의 로버트 콘들린(Robert Condlin)은 하버드 교육대학과 연계하면서 임상교육에 관한 교육학이론과 방법론을 수용하였다.⁴⁰⁾

로스쿨 학생들은 소장을 작성하거나 임상교수나 급우들과 토의를 하면서, 그리고 법제도 내에서 재판관들과 변론을 하거나 사건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서 로여

의 응집성, 집단압력과 집단표준, 집단목표, 집단이동, 집단의 구조적 특성, 리더십 등에 관한 실험적 분석이 있다. <http://www.wilderdom.com/Group.html> (2007년 12월 26일 검색).

- 39) “콜럼비아 로스쿨의 임상교수들은 학생들이 협상하는 것을 감독하였고,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추상화하고 일반화함으로써 상대 변호사와의 성공적 협상을 위한 원리를 도출하였다. 학생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를 표현하며, 상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흥정하고, 합의를 확인하였다. 변호사-의뢰인 상호간의 과정에 집중함으로써 임상교수는 무엇이 법제도에 참여한 사람들의 동기를 유발하는지, 변호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을 개발해 왔다.” Menkel-Meadow (1980), 566면.
- 40) 콘들린은 로스쿨 학생들이 경쟁적이고 설득적 방식으로 학습한다고 주장한다. Robert Condlin (1981). “Socrates’ New Clothes: Substituting Persuasion for Learning in Clinical Practice Instruction.” 40 *Md. L. Rev.* 223.

링 역할을 학습한다. 이러한 학습은 반복된다. 임상가들은 법학 교육자로서 어떻게 학생들이 변호사로서 행동할 것인지를 일반화하고 이론화한다. 실무자인 변호사의 직업행태가 이전에 학습한 경험에 근거하여 모형화 되기 때문에 현재의 학습경험은 실무가와 교육자로서 장래의 직업행태에 대한 모형을 만드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령, 상담과정이 변호사가 대안을 의뢰인에게 “교육하는” 경우일 때, 실무가는 교육자로서 행위한다. 이 과정은 교사가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할 수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변호사는 법정에서 재판관을 교육시키며, 협상과정에서 상대 변호사를 교육시키고, 궁극적으로 일반적인 실무에서 자기 자신을 교육시킨다.⁴¹⁾

특히, 이러한 로어링 과정에서 비판의 역할을 강조하는 콘들린은 우수한 변호사와 비윤리적 변호사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은 전략적 규범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는 결코 상담과 지배, 조종과 조작사이의 경계를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전략적 규범틀을 만들기 위한 학습은 임상 기술 훈련의 중요한 특징이다.⁴²⁾

IV. 임상법학교육방법론

임상법학교육은 로어링이 갖는 가치와 실무를 배우는 법학교육의 과정 내지 방법이다. 임상법학교육을 기술훈련과 동의어로 여기는 것은 임상법학교육을 협소하게 파악한 결과이다. 이하에서는 벨로우의 가치 중심의 거시 임상이론을 중심으로 임상법학교육방법론을 고찰한다.⁴³⁾

⁴¹⁾ Menkel-Meadow (1980), 568면.

⁴²⁾ 콘들린은 비판을 통한 임상교육이 본질적 임상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비판을 통한 훈련이 없다면 정의(正義) 실현을 고려하는 변호사의 성향은 개발되지 못할 것이다. 변호사들이 고의로 또는 부지중에 정치적·도덕적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우수한 변호사는 정의와 공평이라는 개념에 기반하여 일상적 업무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한 평가과정은 직장에서도 나타난다. 가령, 학생들은 졸업하고 나면 전통적 행동규범에 자신들을 경솔하게 동화시키면서 심리적·정치적·재정적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 이 경우 그러한 압박을 전환시키고 자율적 행위자가 되기 위해 그들은 형성 단계에서부터 비판적 사고 기술을 연습해야 한다. Robert Condlin (1986). ““Tastes Great, Less Filling”: The Law School Clinic and Political Critique.” 36 *J. Legal Educ.* 45.

⁴³⁾ 이 글에서는 골드하브의 구분에 따라 벨로우가 제시한 임상법학교육방법론을 경험, 비판적 성찰, 책임윤리, 간학문적 학습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Goldfarb (1991),

1. 경험

벨로우를 비롯한 많은 임상가들은 로여링을 통한 학습이란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학생들은 임상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게 된다.⁴⁴⁾ 학생들은 임상에 참여하면서 스스로를 관찰할 때,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질 때, 그리고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학생으로서 정체성이 충돌할 때 긴장한다. 이러한 긴장을 통해 학생들은 법제도와 로여링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우며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변호사의 수행을 평가할 기준과 그리고 그들이 관찰했던 일련의 직업적·제도적 행태들을 설명할 이론들을 임상교수진과 논의한다.⁴⁵⁾ 학생들은 의뢰인 대리 과정에서 자신들이 내린 다양한 결정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로여링 기준과 이론들을 연구한다. 또한 학생들은 법적·개인적·제도적 문제들이 혼합된 의뢰인의 사건을 대리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확인·분석하고, 가능한 소송 과정의 목록을 충분히 고려·평가한다. 그들은 이를 위해 동료 학생들과 교사뿐만 아니라 의뢰인·상대 당사자·증인·법관·법원관리·기타 이해관계인들과 상호 작용해야 한다.

TLP를 통해 학생들은 대리행위와 의사결정에 감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학습하게 된다.⁴⁶⁾ 따라서 임상가는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 평생 스스로 학습할

1647-1667면.

44) 벨로우는 학습을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함으로써 면담인, 계획수립자, 수사관, 논쟁자, 상담가와 같은 변호사의 상이한 역할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역할에 대한 통찰력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임상과정의 중심이 되고 있다.

45) Goldfarb (1991), 1648면.

46) Bryant & Milstein (2003), 13면. 벨로우는 의사결정과정을 로여링의 중심으로 보았다. 그는 하나의 과제에서 결정된 선택이 어떻게 다른 로여링 과정이나 송무대리에 관한 전체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는 로여링 과정을 지향함으로써 전체 과제들의 선택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을 유도하였다. 과정의 강조로 인해 학생들은 모든 로여링 과제에서 사용되는 의사결정모델(Decisionmaking Model)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Scherr (2002), 184-188면. 의사결정모델은 의사결정이론에서 주장된다. 의사결정이론은 어떤 주어진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방법이 있을 때,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 관한 이론이다. 따라서 의사결정모델은 주어진 상황과 선택 가능한 행위 그리고 결과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갖는다. 특히, 의사결정모델은 의사결정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비교가능성의 공리와 일관성의 공리에 따라 행위할 때 합리적으로 행위하는 것이 된다. 합리성 논의와 관련하여 셀몬(M. H. Salmon)에 의하면 의사결정이론적 합리성은 행위자는 다양한 행위결과와 독립적으로 행위하며 확률적 지식만을 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다.

2. 비판적 성찰

가치를 지향하는 임상법학교육의 목표는 실무에 존재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 있다. 벨로우가 주장한 이후 오늘날까지 비판적 성찰은 훌륭한 변호사⁴⁷⁾의 본질적 특성으로 간주되어 임상교육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다. 임상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면서 로어링 과정과 사법제도(司法制度)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사와 학생들은 “왜”라는 질문을 통해 의뢰인의 개인적 문제와 제도적 문제의 관련성을 찾고 이에 대한 대안을 구상한다. 비판의 과정은 훌륭한 변호사에게 평생학습자로서 임상교육이 개발해야 될 기본적 로어링 기술이다.⁴⁸⁾

학생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대리하면서 빈민, 여성, 범죄자, 인종적으로 또는 성적(性的)으로 소수자인 의뢰인의 관점에서 법제도를 비판하고 임상 경험을 통해 제시되는 쟁점들을 성찰한다.⁴⁹⁾ 벨로우는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찰하도록 장려하면서 학생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시키고 의뢰인에 대한 감정을 고려하게 하였다. 성찰을 통해 학생들은 선형적 이론과 원리를 의식으로 가져와 소송의 근거가 되는 이론을 수립한다. 학생들은 그 이론들을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개선시킬 수 있다.⁵⁰⁾

진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행위자가 신념을 형성할 때 사용가능한 증거를 훌륭하게 이용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위자의 신념이 편견에 따른 것이라도 그 행위는 합리적일 수 있다. 정영기(1996). **과학적 설명과 비단조 논리**(서울: 엘멘출판사), 76-98면.

47) 벨로우는 TLP에서 비판적이며 자신을 성찰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책임감 있는 변호사를 의미하는 “훌륭한 변호사(good lawyer)”라는 이론을 개발하였다. III. 1. 가. *The Lawyering Process* 참조.

48) Goldfarb (1991), 1651면.

49) Rose Voyvodic (2001). “Considerable Promise and Troublesome Aspects: Theory and Methodology of Clinical Legal Education.” 20 *Windsor Y.B. Access to Just.* 111, 134면.

50) 교육학적으로 이러한 노력의 성공은 계획과 평가과정 전반에 걸쳐 주의 깊고 예민한 심사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러한 심사는 정확한 자기 평가를 포함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동안 밝혀진 것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다. Goldfarb (1991), 1648면.

3. 책임 윤리

벨로우는 윤리 및 가치가 로여링의 중심이라고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사회정의에 공헌하는 책임 있는 변호사가 되라고 격려했다. 변호사-의뢰인 관계와 법률 서비스로의 접근에 대하여 TLP가 제기한 많은 윤리적 문제들⁵¹⁾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강의실에서 제시되는 가상적인 윤리적 딜레마에서는 그 사안이 아주 구체화된 경우에조차도 그 사건을 유발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윤리적 판단을 위한 조건이나 윤리판단의 제약에 관련된 수천 개의 무형적인 것을 놓치게 된다. 임상학생들은 현실세계에서 작업하면서 처음으로 책임을 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딜레마를 해결하게 된다.⁵²⁾ 학생들은 로여링 과정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임상가의 태도를 관찰하고 그러한 딜레마를 임상가와 상담함으로써 윤리적 로여링의 성향을 내면화한다. 학생들은 임상가와 함께 로여링 경험을 성찰함으로써 변호사로서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원리를 개발한다. 임상가들은 학생들이 직업적 책임에 직면하고 변호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때 윤리적 습관을 갖도록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한다.⁵³⁾

4. 간학문적 학습

벨로우는 TLP에서 간학문적 학습의 가치를 증명하였다. 그는 인지심리학·수사학·경제분석학·고용관계·사회사업·문헌분석 등 간학문적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벨로우는 특정기술에 관한 일반이론을 소개하였다. 가령, 협상과정을 위해서는 전략적 게임이론을, 상담을 위해서는 개인 상호간에 발생하는 역학이론을, 면담과 변론을 위해서는 소통이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그는 특정기술을 수행하기 위한 모델로서 면담을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과 질문 기법

51) 벨로우는 특정 준칙으로부터 누가 혜택을 누리는가, 하나의 준칙은 어떠한 가치를 반영하는가, 윤리적 준칙과 그 적용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가, 그 준칙들은 그것을 채택한 변호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들을 학생들에게 제기한다. Bryant & Milstein (2003), 18면.

52) 가령,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자고 제안하거나 학생들이 보기에 도덕적으로 모순되는 상황을 의뢰인이 추진하기 원하는 경우, 학생들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이해의 충돌을 다루어야 할지, 자격 없거나 비윤리적 법조인 혹은 상대방 변호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53) Milstein (2001), 378면.

을 제시하였다.⁵⁴⁾ 임상의 맥락적 접근은 임상 참여자들에게 이론적이며 간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제공한다.

임상법학교육은 전통적 법학교육이 간과하기 쉬운 현실의 다차원적 상호관련성을 이해하도록 간학문적 학습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법과 정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통찰하면서 이론과 실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⁵⁵⁾

V.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

위에서 살펴본 미국 임상법학교육이론과 방법론이 우리나라 임상법학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여기서 논의되는 임상법학교육은 법학이론과 법률실무를 연계하면서 가치를 지향하는 임상법학교육임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향후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미국 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을 도입한다고 할 때,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⁵⁶⁾ 법조인을 양성하는 가치 중심의 임상법학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⁵⁷⁾ 이러한 로스쿨 도입취지와 교육목표는 이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1. 우리나라 임상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미국의 임상법학교육방법을 한국에 도입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임상법학교육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미국의 임상법학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이론적인 토대가 미약하다. 둘째, 우리나라에

⁵⁴⁾ Bryant & Milstein (2003), 14-15면.

⁵⁵⁾ Goldfarb (1991), 1656면.

⁵⁶⁾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544호) 제2조(교육이념) 참조.

⁵⁷⁾ 그러나 지나친 법률실무의 강조는 자칫 법률가의 사고를 경직되게 할 수 있다. 미국 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이 단순히 송무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로스쿨에서도 학생들이 6개월 내지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임상교육을 받고 졸업후 변호사들이 직면하게 될 모든 송무기술을 습득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송무기술만을 배울 수 있을 뿐, 나머지는 졸업 후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기관에 취직하여 경력을 쌓아가면서 배워야 하였다. 기술만을 중시하는 임상법학교육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가치 중심의 거시 임상이론이 대두한 것이다.

는 미국과 같은 “학생실습규칙(student practice rule)⁵⁸⁾”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론할 수 없다. 셋째, 각 학교마다 변호사 시험 등 졸업후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부담이 크다. 넷째, 학비만으로 임상교육을 충당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부담 또한 크다. 다섯째, 다른 전공 전문인들과의 교류가 부족하여 간학문적인 임상교육방법을 활용하기 곤란하다. 여섯째,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부족하여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법률서비스를 임상교육에서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법학교육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그 지원 자체가 재정적인 확보로 연결되어야 한다. 셋째로,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들에게 임상을 가르치기에 앞서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임상교원⁵⁹⁾을 양성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보면 임상법학교육이란 변호사로 일했던 교수들이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좁게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⁶⁰⁾ 임상법학교육은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책임 있는 변호사로 성장케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상교원 양성을 비롯하여 이에 적합한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자신의 학생들이 졸업 후 변호사 자격시험에 많이 합격하고 훌륭한 법조인으로서 명성을 얻기를 바란다. 그렇기에 임상법학교육을 받은 학생이 임상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보다 월등하게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고용시장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은 임상법학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돈독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의 임상교육 및 졸업생들의 취직에

58) 각주 5) 참조.

59) 이 글에서 임상교원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교수뿐만 아니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교수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임상법학교육의 모델이 외부연수 클리닉임을 고려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외부연수 클리닉의 교육적 측면을 담당할 교수들은 반드시 변호사 자격증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외부연수기관에 있는 변호사나 검사 혹은 판사가 학생들의 임상경험, 통칭 실무실습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는 임상·교육'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외부연수 클리닉의 단점을 보완한다. 임상법학교육종류에 대하여는 II장 참조.

60) III. 임상법학교육이론 참조.

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우리나라 임상법학교육의 전망: 현실적으로 가능한 임상모델

이처럼 법학전문대학원이 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는 점(지역과의 연계), 인-하우스 클리닉을 운영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재정마련), 그리고 임상이론에 대한 연구나 임상을 가르칠 경험 있는 교사가 부족하다는 점(인력충당) 등 재정·제도·이론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로스쿨 내에 법률구조 사무실을 두고 있는 미국의 인-하우스 클리닉을 도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인-하우스 클리닉이 교육적인 효과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학생실습규칙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임상모델은 외부 연수 클리닉이다.⁶¹⁾

효과적으로 외부연수 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은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1) 싱크 탱크로서의 전담기구 설립, (2) 임상교원 양성, (3) 변호사 자격을 요하지 않는 법률 서비스 제공, (4) 교육적인 효과가 부족한 외부연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수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학생 교육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담당⁶²⁾, (5) 졸업 후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산학협력단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재학 중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유상(有償)의 고용기회 창출, 이를 전담할 기구 마련⁶³⁾, (6) 법률 문서 작성

61) 법원 등 법률기관이나 공익법률 사무소 또는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변호사들로부터 강의 계획을 포함한 지원서를 받아 그 중 적절한 기관을 채택하여 그 기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책임자를 두어 이를 매주 관리하는 방법이다.

62) 가령, 의뢰인의 이익과 학생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연수 기관의 변호사는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 보다는 사건해결에 더 중점을 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기관이고 외부연수 또한 법학교육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외부연수 클리닉에서 소홀하기 쉬운 교육적인 측면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담당해야 한다.

63) 노스이스턴 로스쿨의 협력법학교육(Cooperative Legal Education)은 하나의 좋은 예이다. 노스이스턴 로스쿨은 학생들이 법조경력을 쌓도록 이들을 훈련시키는 독특한 접근 방법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1학년 때 기존의 전통법학 이론연구를 완수한 다음, 나머지 2년 동안에는 3개월 동안 법률 인턴으로서 상근으로 일하거나 3개월 동안 상근으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매 3개월을 번갈아가면서 학습한다. 모든 학생들은 4개의 협력 작업 쿼터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다. 하나의 작업 기간을 “co-op(코업)”이라고 하며 평균적으로 200명의 학생들이 (모든 크기의) 민간 로펌, 법률서비스, 공익변호 연합, (주 및 연방, 1심 및 항소)법원 서기, 정부기관, 회사 법무팀, 조합 및 특별한 이익 권익옹호 조직을 비롯하여 다양한 법률 실

이나 법률 추론 수업에 클리닉 요소를 가미한 교육방법 개발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연계, (7) 법원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가령 재판 전 분쟁해결 프로그램 운영, (8) 지구지역화(glocal)의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있는 법률 상담소를 활용하여 지역기관과 파트너십을 조성하여 지역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 제공, (9) 사회복지학이나 심리학 등 다른 학문과 연계하여 다원화된 클리닉 운영, (10) 졸업생들이 현장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법률쟁점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졸업생들을 위한 임상교육 실시.

3. 효과적인 외부연수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법률구조와 관련하여

앞서 제시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은 무엇보다도 법률구조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서 의뢰인을 기다리기보다는, 지역사회로 직접 뛰어들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아웃리치 프로그램(outreach program)을 실시해야 한다.⁶⁴⁾ 왜냐하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사무실을 찾아올 수조차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 성공 예는 필리핀 법과대학이다.⁶⁵⁾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세 가지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접근방식과 구분된다. 첫째, 기존의 법률구조는 수동적이며 사무실 중심인데 반해,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사무실에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아웃리치 프로그램 학생들은 때때로 여러 날 동안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돕기도 한다. 둘째, 기존의 전통적인 법률구조의 접근방식이 치료적이거나 구제 중심이었다면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예방적인 접근방식을 취한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예방함으로써 더욱 악화되

무를 하면서 매 쿼터마다 채용된다. 코오프 학생들은 변호사 협회 회원이나 재판관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실질적인 법률 작업을 담당받는다. 현재 30여 개 주(州)의 700개 이상의 사용자들이 대보스톤 지역의 대다수의 코오프 채용과 함께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Roger I. Abrams, "Co-op Program." 15 *St. John's Journal of Legal Commentary* 295 (Spring 2001) 참조.

⁶⁴⁾ Florencio B. Abad & Adrian S. Cistobal, Jr., *The Philippine Legal Aid System: Evolution and Emerging Trends* (1997); A. Tadiar, "The State of Clinical Legal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1 *The Law Intern* 8 (1990), 245면 재인용. 참고, 「Korean Legal Aid System」, Temple Law School 석사논문 (2000, 미간행).

⁶⁵⁾ A. Tadiar, "The State of Clinical Legal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1 *The Law Intern* 8 (1990).

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셋째, 기존의 법률구조가 법원중심의 법률적 접근이었다면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구하며 순수하게 사법적이거나 법률적인 구제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가령, 어부, 농부, 농촌 빈민자 혹은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게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한 예이다.⁶⁶⁾

이러한 사례는 1980년대 우리나라 법과대학에서 실시한 농촌봉사활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비록 사회주의 사상에 고취된 학생들이 반정부적인 이데올로기를 농민들에게 가르친다는 이유로 당시 정부에서 이를 금지함으로써 농촌봉사활동이 중단되었으나, 이러한 법률봉사활동은 가치 중심의 임상법학교육을 추구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접근방식에 따라 임상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드시 농촌만을 겨냥할 것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은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의 조직 및 기관들과 연결망을 만들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인력이나 재원이 부족하다면 조지타운(Georgetown) 로스쿨의 가정폭력 의뢰 프로젝트(Domestic Violence Resouce Project, DVRP)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상설전화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공강 시간에 돌아가면서 전화접수를 할 수도 있다.⁶⁷⁾ 또한 의뢰인에게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변호사나 기관들을 의뢰인에게 의뢰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⁶⁸⁾ 이러한 유형은 미국 로스쿨의 초기 임상교육 단계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가정폭력 프로젝트를 운영한 것과 유사한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생자원봉사형식의 임상이 점차 법학전문대학원의 커리큘럼으로 통합되어 학점이수를 인정하는 등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형편에 따라 발전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재정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임상교육의 재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예산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

⁶⁶⁾ Florencio B. Abad & Adrian S. Cistobal, Jr., *The Philippine Legal Aid System: Evolution and Emerging Trends* (1997); A. Tadiar, "The State of Clinical Legal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1 *The Law Intern* 8 (1990) 246면 재인용.

⁶⁷⁾ <http://adidvrp.org> (2007년 7월 25일 검색)

⁶⁸⁾ 여성긴급전화 서울 1366, 상담메뉴얼(2006) 참조.

냐하면 공익재단이나 국가의 지원금/기부금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그동안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지속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재정마련을 위해 시민단체들과 원치 않는 경쟁도 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미국에서는 신탁(trust)제도를 통해 민간 로펌들이 변호사 수입료 등 소송비용을 신탁기관에 예치하여 그로부터 생기는 이자 내지 이익을 공익변호 기관이나 공익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각 기업들이 1%의 수익을 사회로 환원하려는 노력들이 있는 것을 볼 때, 클리닉 운영을 위한 재정마련의 방안으로서 신탁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⁶⁹⁾ 또는 아름다운 재단의 공익변호사집단인 「공감」을 예로 볼 때⁷⁰⁾ 공익변호사를 위한 기금을 통해,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의 산하 기관으로서 재단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감」은 각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재정 및 인력을 지원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를 법학전문대학원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법률구조의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한 법조인들의 활용이 고려된다. 아직 우리나라는 퇴직한 재판관이나 검사가 대형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채용되거나 개인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 관례라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변호사회」의 경우⁷¹⁾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2차례씩 1주일동안 법대기독교학생회의 학생들을 각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습토록 변호사들이 지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헌신된 법조인의 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른 한편, 기존의 법과대학에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또 다른 대안은 노스이스턴 로스쿨의 1학년 임상훈련처럼 병원 응급실 환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는 임상실습이나 중재나 조정 등을 포함한 대안적 분쟁해결의 운영이다.⁷²⁾ 학생들이 단순히 상담원의 보조 역할만을 하였던 기존의 교육 방법에서 한걸음 더

69) 석사논문에서도 밝혔듯이 한국 변호사들과의 면담조사를 통해 신탁이자(信託利子) 사용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전해정(2000). *Korean Legal Aid System*. Temple Law School 석사논문 (미간행) 참조. 미국의 공익활동에 대한 내용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편(2001). 『변호사 공익활동 프로그램』. 대한변호사협회 참조.

70) http://www.kpil.org/together/together_01.asp (2008년 8월 24일 검색)

71) http://www.clf.or.kr/zboard/zboard.php?id=section_05 (2008년 8월 24일 검색)

72) 전해정(2008). **미국 임상법학교육방법의 이론과 실제**(서울: 한국학술정보(주)) 참조.

나아가, 병원 응급실이나 경찰서, 혹은 법원의 접수창구와 같은 실습현장에 학생들을 투입시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소송전 단계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이나 중재 등을 하도록 법원과 연계하여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 이는 특별히 변호사 자격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생실습규칙’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시도해 볼 만하다.⁷³⁾

그밖에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법과대학과 단절되곤 하는데,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미국의 경우처럼 학계와 실무계가 함께 공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도 실무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학교와 연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령, 노스이스턴 로스쿨의 클리닉 프로그램처럼⁷⁴⁾ 지도교수의 감독하에 졸업생들이 재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거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하는 것은 유익한 참고사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임상법학교육을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집중적으로 임상법학교육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전담기구는 임상법학교육이론과 이를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법률 실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특히 판결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비판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판례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경우, 전담기구 스스로 헌법소원이나 집단소송 등의 소제기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원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교재(教材)의 내용으로 삼을 수도 있다.

둘째, 전담기구에서는 임상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가령, 법원 및 검찰과의 연계를 통해 법률 실무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임상법학교육방법론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또한 전담기구는 역할극을 통한 모의훈련이나 외부연수 등을 개설할 수 있다. 어떤 형태의 클리닉을 운영할 것이냐는 재정 및 인적인 자원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할 문제

73) 이를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훈련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각 로스쿨 사례들은 전해정(2008). **미국 임상법학교육방법 이론과 실제**. 한국 학술정보(주) 참고.

74) <http://www.slaw.neu.edu/clinics/clinics.html> (2008년 8월 24일 검색)

이다. 재정이 허락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자체적인 법률구조기관을 두고 법학교수가 아닌 교직원으로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나, 여의치 않으면 차선의 선택으로서 외부연수 클리닉을 운영하거나, 이도 여의치 않으면 조지타운 로스쿨처럼 전화접수창구를 만들어 학생들 스스로 임상실습을 할 수 있다.

셋째, 임상법학교육을 위한 교재발간 및 학술 편찬에도 주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학교육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임상법학교육의 이론과 방법론을 내용으로 하는 교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내지 전담기구 내에 임상법학만을 주제로 한 도서관을 마련하는 것도 임상법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중요하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앞서 서술한 대로 기존의 법과대학이 지역사회와 유리됨으로 말미암아 법학교육 자체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간과하여 왔으나,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그 지역의 법원, 시민단체, 행정기관 등과의 교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임상법학을 가르칠 임상교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임상법학교육은 법률기술교육과는 다르다. 임상법학교육을 실시하려면, 무엇보다도 임상법학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임상가를 양성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⁷⁵⁾ 임상법학교육은 기존의 법학이론 수업과 다르며 또한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교육과도 다른 방법론을 사용한다. 임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질의 교사양성은 법학교육의 실천적 토대를 위해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미국 로스쿨 연합(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 AALS)은 각 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 프로그램의 책임자와 임상가를 위한 학술대회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⁷⁶⁾ 우리나라 법학교수와 임상법학교육에 관심 있는 법조인들이 이러한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임상법학교육의 이론과 방법을 배운 후 이를 우리나라에 소개하든지, 또는 미국의 저명한 임상교수를 초빙하여 함께 한국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이다.

임상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방법은 (1) 교육자와 교육생의 평등 관계수립⁷⁷⁾,

75) 이 글의 III., IV. 참조.

76) http://www.aals.org/events_clinical.php (2008년 8월 25일 검색)

(2) 교육생의 다양한 경험 수용, (3) 성중립적인 언어사용, (3) 가치 추구, (4) 비판적 성찰, (5) 역할모델 내지 멘토로서의 교육자 역할 등이다. 또한 임상법학교육 이론, 임상법학교육방법론, 평등론 등 가치실현을 위한 교육내용이 1단계 교육이 될 것이고, 2단계에서는 가령, 임상가를 위해서는 법률구조(法律救助)를 비롯한 국가정책, 소통이론, 상담심리학 등 관련 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경험상, 1단계에서는 많은 과목을 개설하기보다는 하나라도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것이 좋다. 1단계 교육과정의 목적은 임상법학교육이론 측면에서 볼 때 가치를 지향하는 거시 임상이론의 확립에 있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철저한 임상교육이론 및 방법론이 학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자는 개인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고 협력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교육생의 역할모델이 되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의 역할 내지 기능은 서로가 상호보완적이다. 교사를 양성하여 교재를 발간하거나 임상법학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고, 판례평석을 통해 이를 임상교육에 적용할 수도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임상교육연구는 물론 교육 프로그램 연구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과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가이다. 재정문제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인재양성이 시급하기에 우선적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판례연구를 실시한 다음,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임상교사가 되어, 그들이 학생들에게 임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순차적이다. 가치를 지향하는 임상법학교육의 입장에서 단순히 실무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법학이론을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의 법제도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책임 있는 변호사로 성장시키는 것이 임상법학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이와 동시에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일단 지역사회 각 기관 담당자들과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상법학교육의 특성상 임상법학교육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이미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재발간은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준비된 자료들을 보충·수정하면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교육자와 교육생이 협력하여 교재발간에 참여할 수 있다.

77) 이는 III.과 IV.에서 살펴본 임상법학교육이론과 방법론을 상기할 때 학생과 교수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설정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VI. 결

2009년 출범을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조인 양성이 라는 교육목표에 따라 미국 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변호사처럼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미국 로스쿨의 소위 소크라테스식 법학방법론은 상급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법학교수가 제시하는 가설에 근거한 교육방법이다. 미국의 임상가들은 이를 비판하면서 독자적으로 방법론을 개발하여 왔다. 이들은 이론 중심의 법학교육을 비판하고 실무교육을 강조하였다. 임상법학교육의 종류에는 인-하우스 클리닉, 외부연수 클리닉, 그리고 모의훈련이 있다. 인-하우스 클리닉은 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운영되며, 외부연수 클리닉은 학생들에게 현장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모의훈련은 임상에 필요한 모든 기술과 이론 등을 역할극 등을 통해 가르치는 임상법학교육이다. 한편, 임상가들 사이에 임상법학교육이 실무에서 유능한 변호사가 되도록 기술을 가르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정의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 중심을 두는 가치지향 교육인가에 대하여 대립이 있다. 실천 자체가 인식에 의해서 향도되며 인식이야말로 법실무 역동성 또는 사회 변혁과 관련됨으로써 법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형성하기 때문에 임상법학교육은 거시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거시 임상이론은 경험, 비판적 성찰, 책임윤리, 간학문적 학습을 임상법학교육방법론으로 채택한다.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상법학교육은 가치를 지향하는 거시 임상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기반하여 교육받은 학생들은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을 돕는 로여링 경험을 토대로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변호사로서 법제도 속에서 훌륭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나아가 학생들은 지역사회와 다른 학문분야의 연구 및 협력을 통해 법과 정책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고 로여링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들을 성찰함으로써 사회정의에 공헌하는 책임 있는 변호사로서 성장할 것이다.

임상법학교육의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는 인-하우스 클리닉이 거시임상이론에 가장 적합하나, 미국과 같은 “학생실습규율”이 없고 경제적·제도적·이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시 가능한 임상교육은 외부연수 클리닉이다. 외부연수 클리닉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임상교육과 훈련을 담당할 전담기구를 두어 여기서 임상훈련과 교육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담당케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외부연수 클리닉을 운영하는 경우 자칫 교육적인 측면에 소홀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은 외부기관의 법조인에게 학생들을 맡길 것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의 교수들이 임상교육의 교육적인 측면을 담당해야 한다. 왜냐하면 외부연수 클리닉도 법학‘교육’의 일환이며 법학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외부연수 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임상교원양성과 임상법학교육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임상법학교육은 오랜 경험 속에서 성숙되어 왔으며, 이를 제도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출발선상에 있다. 비록 지금까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논의에서 임상법학교육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미미하였지만, 향후 효과적인 임상법학교육은 무엇인지, 그 이론과 방법론에 관한 보다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이 글이 그러한 연구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투고일 2008. 4. 29 심사완료일 2008. 9. 10 게재확정일 2008. 9. 11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 전해정(2008). *미국 임상법학교육방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국학술정보(주).
 정영기(1996). *과학적 설명과 비단조 논리*. 서울: 엘멘출판사.

2. 외국문헌

가. 단행본

- Bellow, Gary & Bea Moulton (1978). *The Lawyering Process*. St. Paul: West Publishing.
 Bergman, Paul, David Binder, & Susan Price (1991). *Lawyers as Counselor*. St. Paul: West Publishing.
 Binder, David & Susan Price (1977). *Legal Interviewing & Counseling: A Client-Centered Approach*. St. Paul: West Publishing.
 Sullivan, William M., Anne Colby, Judith Welch Wegner, Lloyd Bond & Lee S. Shulman (2007). *Educating Lawyers*. San Francisco; JB-The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나. 논문

- Abrams, Roger I. (spring 2001). "Co-op Program." 15 *st. John's Journal of Legal Commentary* 295.
 Amsterdam, Anthony (1974). "Perspectives on the Fourth Amendment." 58 *Minn. L. Rev.* 349.
 Barry, Margaret Martin (2000). "Clinical Education for This Millennium: The Third Wave." 7 *Clinical L. Rev.* 1.
 Bergman, Paul (1978). "A Practical Approach to Cross-Examination : Safety First." 25 *UCLA L. Rev.* 547.
 Bryant, Susan & Elliott S. Milstein (2003). "Reflections upon the 25th Anniversary of the Lawyering Process: An Introduction to the Symposium." 10 *Clinical L. Rev.* 1.

- Bryant, Susan & Elliott S. Milstein (2007-2008). "Rounds: A "Signature Pedagogy" for Clinical Education?" 14 *Clinical L. Rev.* 195.
- Condlin, Robert (1981). "Socrates' New Clothes: Substituting Persuasion for Learning in Clinical Practice Instruction." 40 *Md. L. Rev.* 223.
- Condlin, Robert (1986). "'Tastes Great, Less Filling': The Law School Clinic and Political Critique." 36 *J. Legal Educ.* 45.
- Goldfarb, Phyllis (1991). "Theory-Practice Spiral: The Ethics of Feminism and Clinical Education." 75 *Minn. L. Rev.* 1599.
- Johnson, Margaret E. (2005). "An Experiment in Integrating Critical Theory and Clinical Education." 13 *Am. U. J. Gender Soc. Pol'y & L.* 161.
- Jun, Hae Jeong (2000). Korean Legal Aid System. Temple Law School. LL.M. dissertation. unpublished.
- Menkel-Meadow, Carrie (1980). "The Legacy of Clinical Education : Theories About Lawyering." 29 *Clev. St. L. Rev.* 555.
- Milstein, Elliott S. (2001). "Clinical Leg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In-House Clinics, Externships, and Simulations." 51 *J. Legal Educ.* 375.
- Scherr, Alexander (2002). "Lawyers and Decisions: A Model of Practical Judgment." 47 *Vill. L. Rev.* 161.
- Schrup, Sarah O'Rourke (2007-2008). "The Clinical Divide: Overcoming Barriers to Collaboration between Clinics and Legal Writing Programs." 14 *Clinical L. Rev.* 301.
- Spiegel, Mark (1979). "Lawyering and Client Decisionmaking: Informed Consent and the Legal Profession." 128 *U. Penn. L. Rev.* 41.
- Voyvodic, Rose (2001). "Considerable Promise and Troublesome Aspects: Theory and Methodology of Clinical Legal Education." 20 *Windsor Y.B. Access to Just.* 111.

다. 인터넷 자료

<http://adidvrp.org> (2007년 7월 25일 검색).

<http://www.wilderdom.com/Group.html> (2007년 12월 26일 검색).

<http://www.law.nyu.edu/journals/clinicallawreview/vol14no1fall2007/index.htm>(2008

년 8월 4일 검색).

http://www.kpil.org/together/together_01.asp (2008년 8월 24일 검색).

http://www.clf.or.kr/zboard/zboard.php?id=section_05 (2008년 8월 24일 검색).

<http://www.slaw.neu.edu/clinics/clinics.html> (2008년 8월 24일 검색).

http://www.aals.org/events_clinical.php (2008년 8월 25일 검색).

<Abstract>

Theories and Methods of Clinical Legal Education - Challenge and Promise of Korean Clinical Legal Education -

Hae Jeong Jun*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based on lawyering experience began in 1890s criticizing case methods and grew out of the progressive reform movement of the 1960s and 1970s. Law schools expanded their in-house clinic, which responded to students' desire to learn how to use law as an instrument of social change and serve the poor. Since 1990s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has adapted to the digital age or global era as collaborating other professions and cooperating local communities. Besides in-house clinics, there are externship programs and simulation courses. Among three different branches of clinical leg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standard clinical model is in-house clinic which focuses on legal "education".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movement concerned with the question "What is it that lawyers do?" has suggested some new theories about the role of the lawyer and the practice of law. Most theories of what lawyers do may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micro theories, which focus on the role and behaviors of the individual lawyer, and macro theories, which focus on the lawyer's interaction with the legal system, and the impact of lawyers on the larger world. Gary Below, the theoretical father of clinical education, made contributions to developing theories of the "good lawyer." His work combined the methods of learning with the substance of what they were teaching and illustrated how theory and practice can be integrated. Clinical education offers law students methods learning from experience, inter-disciplinary learning, critical reflection and responsibility. Students learn their role as a lawyer in the legal system as

* BK21 Post-doc,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helping the excluded with other experts such as social workers, and as critically reflecting the lawyering experience and ethical issues in their practices so that they become responsible lawyers with insights about law and policy, who devote themselves to social justice.

Even though in-house program focuses on the “education” so that it is better for legal education than any other clinics, the applicable clinical program to the so-called Korean law schools is externship clinic because Korea has no student practice rule like America. In order to reinforce and enhance the externship, however, it needs to be supervised by the schools which plays a critical role in educating clinic students.

Key words: Lawyering, Clinical Legal Education, Clinical Legal Theories, Clinical Legal Methods, Legal Clinics, Legal service and clinical legal education, Externship.